

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

재 결 서

사 건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교내봉사 120분 등
처분 취소 청구
사 건 번 호 2019-183호
청 구 인 ○○○
피 청 구 인 인천□□초등학교장
재 결 일 자 2020. 1. 20.

주 문

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청 구 취 지

.피청구인이 2019. 10. 16. 청구인에 대하여 한 『학교교내봉사 120분 등』 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I. 사건개요

가. 청구인은 인천□□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고, 피청구인은 위 초등학교장으로, 피청구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(이하 ‘학폭위’ 라 한다) 심의결과에 따라 2019. 10. 16. 청구인과 ○○○의 각 학교폭

력 건에 관하여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학교폭력예방법’이라 한다) 제17조에 의거 각 「서면사과(제1호), 학교내 봉사 120분(제3호), 학생 및 그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4시간」 처분을 하였다(이하 ‘이 사건 처분’이라 한다).

나. 청구인은 2019. 10. 22.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알고, 이에 불복하여 2019. 11. 19.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.

II. 청구인의 주장

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.

- 청구인은 ○○○을 이빨로 물고 밀친 것은 인정하지만, ○○○의 팔을 문 것은 1회에 불과하였고 이는 쌍방간에 대등하게 싸운 것이 아니라 체격적으로 우월한 ○○○이 청구인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마구 흔들어 대자 청구인이 ○○○의 힘을 당해낼 수 없어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 이빨로 팔을 문 것이어서 정당방위를 한 것으로서 그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없기에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III. 피청구인 주장

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.

- 목격학생 등 관련자들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, 청구인은 방어 행위만을 한 것이 아니라, 청구인이 이빨로 ○○○을 물거나 몸을

밀치고, ○○○○의 머리카락을 잡아 싸운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, 그와 같이 1차적으로 싸운 이후에도 재차 싸움을 벌인 행위가 인정되며, 목격 학생들의 진술서에는 쌍방이 서로 싸워 이를 말렸다고만 표현이 나올 뿐,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맞아 말렸다고 표현하지 않는 점 등 사정을 볼 때 청구인의 행위를 방어행위만으로 보기 어려우며, 이 사건 자치위원회 위원들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결정을 한 것이며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에 위법·부당함이 없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.

IV.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

1. 관계법령

가.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17조

나.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9조

2. 판 단

가. 청구인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마구 흔들어 대는 ○○○○으로부터 빠져나오려 했으나 ○○○○이 체격적으로 우월하여 힘을 당해 낼 수 없어서 오른팔을 물은 것인데 피청구인은 그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청구인의 1주 진단과 ○○○○의 2주 진단만을 근거로 쌍방폭행으로 처리하여 학교폭력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·부당하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, 이 사건 행위의 발단은 애초에 ○○○과 ◆◆◆간의 싸움에 청구인이 개입한 것이 폭행의 원인이 되었던 점, ○○○한테 쫓기던 ◆◆◆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청구인이 먼저 ○○○을 못 가게 몸을 붙잡은 점, ○○○이 청구인의 머리카락을 잡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○○○의 옷에 부착되어 있던 모자가 뜯어져 나간 점, 이후 모자를 돌려달라는 ○○○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바닥에 떨어진 모자를 주위 옆에 있던 ◇◇◇에게 전달하며 도망가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○○○이 우월한 체격을 바탕으로 청구인을 일방적으로 폭행을 하던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, 오히려 1차 싸움에서 그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◇◇◇과 함께 ○○○의 모자를 서로 주고받으며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거나, 모자를 되찾으려던 ○○○으로부터 공격당하던 ◇◇◇을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구해주는 행위를 하였고, 그 때문에 다시 ○○○의 공격을 받고 2차 싸움까지 한 점, 그 과정에서 이빨로 ○○○을 물고 몸을 밀치고 ○○○의 머리카락을 맞서 잡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행위는 단순한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서 상호간에 싸움을 한 것으로서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

- 나. 청구인은 “못잡게 하려고 팔을 몸 오른쪽 팔뚝을 한번” 이라고 진술서에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치위원회 회의 당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회의록에는 “4군데로 확인됨” 이라고 기재된 것은 잘못이며,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먼저 ○○○이 청구인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든 것이고 머리카락을 잡힌 가운데 청구인이 다른 학생으로부터 모자를 받아 이를 재차 던진 것일 뿐 패스놀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전후 상황이 모두 생략된 것은 잘못이며, ○○○의 왼쪽 팔에서 관찰된 멍이 청구인이 물어서

생긴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과 무관한 사유로 생길 가능성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○○○○의 왼쪽 팔에서 관찰된 멍과 ○○○○ 측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왜곡되어 판단되었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, ○○○○이 제출한 물린 부위의 사진, 상해진단서(좌측 전완부 및 우측 손목 부위 교상흔적 및 피하 출혈, 모발손실 및 통증), ○○○○ 및 목격학생들의 진술로 볼 때, 청구인이 이빨로 ○○○○을 물거나 다치게 한 부위가 한 곳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, 당시 청구인이외에는 ○○○○을 폭행하거나 신체접촉한 다른 학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, 목격학생들 역시 ○○○○의 모자가 떨어지고 청구인이 그 모자를 주워 다른 학생과 주고받자 ○○○○이 청구인의 머리를 잡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, 청구인이 만약 ○○○○에게 즉시 모자를 돌려줬더라면 제2차 싸움은 없었을 것이고, 나아가 당시까지 아무런 관련이 없던 ◇◇◇한테까지 굳이 시비가 비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싸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, 그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이기에 학교폭력의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.

다. 소결론

그렇다면,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며,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률 제17조의 의거하여 재량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적법, 타당하다.

V. 결 론

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,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.